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고,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2명(5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여성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22. ~ 11.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예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한다.

제4장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279”를 “277”로 하고, 일반직 계 “275”를 “27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66”을 “26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 및 별표 3 삭제는 ‘24.1.1.자로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여성가족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여성정책국) ①·② (생략)	제8조(여성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u>여성 취업정보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사업 지원</u>	<u><삭 제></u>
16. <u>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u>	16. <u>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예방</u> ----- -----
17. (생략)	17. (현행과 같음)
18. <u>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u> 의 지정·운영·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8. <u>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u> ----- ----- -----
<u>제4장 한시정원</u>	<u><삭 제></u>

신·구정원대비표

■ 여성가족부 직제 [별표 1]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79</u>	<u>277</u>	-2
•	•	•	
•	•	•	
일반직 계	<u>275</u>	<u>273</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66</u>	<u>264</u>	-2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3